

2020년 제6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0년 제6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5월 19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부서	임용분야	임용등급	선발예정인원	비고 (근무지)
사회혁신추진단	주민참여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창원
대외협력담당관	국제협력전문(일본어)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창원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창원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연령·성별 제한 없음,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임용예정 부서	임용분야	임용등급	자격기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사회혁신 추진단	주민참여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경 령)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국회포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대외협력, 공동체지원, 시민소통 관련 업무 등 근무경력 ※ 우대요건 : 응시자격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대외협력 담당관	국제협력 전문 (일본어)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경 령)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내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소속으로 국제교류 분야에서 일본어 통·번역을 수행한 실무경력 ※ 우대요건 - 일본어 능력(2년 이내) : JLPT N1급, JPT 840점 이상, SNULT 70점 이상, FLEX 850점 이상 자격증 소유자(택1) - 국내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국내 통번역대학원 일본어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임용예정 부서	임용분야	임용등급	자격기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여성 정책과	양성평등 정책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경 령)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에서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 수행 경력

-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임용 후 수행예정인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 다만,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다. 직무내용

임용분야	임용등급	주요업무
주민참여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공동체 활동가 양성 교육 및 지원 - 주민참여형 공동체 사업 발굴 - 지역공동체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국제협력 전문 (일본어)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경상남도 국제교류 정책 방향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 일본지역 국제교류 추진 및 우호협력 사업 발굴 - 청내 일본관련 국제교류업무 지원 - 일본어 통·번역 지원, 일본 관련 정보수집 및 도정홍보 등 지원
양성평등 정책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도 및 시군 법령·사업·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업무 총괄 (위원회, 사후관리 포함) -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지원 - 성인지 및 양성평등교육 추진 - 성인지 통계 및 성인지 예산 업무 지원

3.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6775호, 2019.12.10.)
-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9869호, 2019. 6.18.)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98호, 2019. 12.26.)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경상남도규칙 제3239호, 2019.11.19.)

4. 보수 수준

-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름

(단위 : 천원)

구 분	등 급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지방행정주사	6급(상당)	75,914	50,584	
지방행정주사보	7급(상당)	62,044	44,066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10.)에 따라 최초 임용시 해당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 능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며,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는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50호, 2020. 1. 7.)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임용 기간

- 2년(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6.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 항목에 대해 개별면접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검정

7. 시험 일정

공 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일자(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020. 5.19.(화) 10일 이상	2020. 6. 1.(월) ~ 3.(수)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18:00)	2020. 6.12.(금)	2020. 6.17.(수) ~ 19.(금)	2020. 6.26.(금)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각 분야별 세부 일정 확정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www.gyeongnam.go.kr>)에 게시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www.gyeongnam.go.kr>) 다운로드

나. 접수장소 :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본관 2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 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 유의사항 >

- 주 소 : 우)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유 효 일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정(택배, 퀵서비스 활용 접수 불가)
* 등기우편은 반드시 담당자 전화확인 후 송부
- 추가서류 : 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 → 도 수입증지 대체
반신용 봉투(응시표 수령용, 등기용 우표 부착, 수신인 성명·주소 기재)

9.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실시
- 1차 공고 응시자는 기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10.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사진 1매(별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4cm)
- 응시수수료 : 경상남도 수입증지(우편접수 시 우체국의 통상환증서)

- 금 액 : 5급(상당) 10,000원 / 6·7급(상당) 7,000원 / 8급·9급(상당) 5,000원
- 판 매 처 : NH농협은행 경남도청출장소(☎055-283-2901, 도청 본관1층)
- 유의사항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불가

②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학력, 자격, 상훈, 경력, 저술, 강의 등 마지막 부분에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 단, 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불가)

③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⑤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조회

⑥ 최종 학력증명서 각 1부(원본)

- 박사 학위는 석·학사 학위, 석사 학위는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모두 제출

⑦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 인정범위 해당 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 불가)
-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발급담당자 성명 및 서명(날인),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성격 증명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첨부
- ※ 비정규직(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 출력 또는공단 방문
- 발급요령 : 보험가입 전체기간 확인가능(경력증명서의 경력 검토용)
-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관련분야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에 대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제출

⑨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모든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증명서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함
(예시 :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 제출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1.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 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합산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상·중·하의 평정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자, 단 동률이라면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평정 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불합격 처리기준

- 면접시험 위원 1인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최종합격자 발표 :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시

12. 응시자 유의사항

- 가.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바람
-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림
- 라.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됨
- 마.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바.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의 발생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사.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원칙(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제출가능)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만 인정되며,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을 수 있음
- 아.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자.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 차.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고시교육담당 ☎055-211-3523)로 문의하시기 바람

13. 코로나19 예방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가. 면접시험일까지 해외 및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난 지역 방문 자제

나.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다.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등의 사유로 면접시험일 기준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경우 자진신고 및 검사 실시

* 신고처 : 질병관리본부콜센터(1339), 경상남도 인사과(055-211-3523)

라. 코로나 19 확진환자, 격리대상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면접 응시불가**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위원·시험관리관과 응시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진행불가

마. 면접시험 당일 개인 음용수 준비 및 면접시험 후 14일간 스스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실시

* 이상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

※ 모든 응시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코로나19 예방조치 소홀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친 적이 있는지 여부도 유심히 살펴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